

분쟁조정 및 PL관련 판례 사례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사례(연소기 중심)

사례 5 - 석유팬히터 화재로 인한 피해액 배상 요구건

사건개요

청구인(부산시 사하구 사하3동 박기봉)은 1989. 11월 중순경 피청구인(신일산업)이 제조한 석유 팬히터(SF-527)를 구입하여 집의 거실에 설치하여 사용함.

청구인의 아들 '박승철' (초등학교 5학년)이 혼자서 팬히터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1991. 1. 8, 14:50경 동 팬히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아파트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음.

1. 당사자 주장

〈 청구인 〉 박기봉

제품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입은 피해이므로 전소된 주택 내부의 시설 및 가재도구 등의 피해 금 30,0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피청구인 〉 신일산업(주)

화재는 제품의 하자 때문이 아니고 사용상의 부주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2.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제87회 위원회 : 1991. 6. 17.)

피청구인은 1991. 6. 29.까지 청구인에게 금8,050,000원을 지급한다.



3. 조정결정 이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4. 조정결정 결과

양 당사자 수락하여 성립, 조정결정대로 배상 조치됨.

사례 6 - 증기보일러 화재로 인한 피해액 배상 요구건

사건개요

청구인(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최인한)은 1988. 7월 피청구인(서연공업사)이 제작한 살균 및 난방용 증기보일러를 금1,200,000원에 구입하여 버섯재배사 내에 설치·사용하던 중, 1990. 12. 25. 새벽 1시 경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 보일러가 전소되고 버섯 재배사 내부 2/3가 소실됨,

1. 당사자 주장

〈청구인〉 최인한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보일러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이므로 피해액 금10,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서연공업사

이 화재는 보일러가 전소되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하나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일러 청소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일러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한 제품이므로 청구인의 피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2.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제80회 위원회 : 1991. 3.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1. 4. 15.까지 청구인의 전소된 보일러와 동종의 보일러를 공급한다.

3. 조정결정 이유

현재 증기보일러가 전소되어 그 화재의 원인을 밝힐 수 없으나 피청구인 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이 보일러와 동종의 보일러를 공급할 의사를 표명하고, 청구인도 이를 받아들일겠다고 하므로 위와 같이 결정함.

4. 조정결정 결과

양 당사자 수락하여, 조정결정대로 이행됨

사례 7 - 기름보일러 화재로 소손된 아파트 피해액 배상 요구건

사건개요

청구인(전남 여천시 신기동 김준길)은 '90. 4. 1. 현주소지의 아파트로 이사하여 전집주인이 동년 1. 4. 피청구인(여수설비사)에게 의뢰하여 설치·시공한 기름보일러(신진 선웨이 일등보일러 SF-150)를 사용하던 중, '91. 1. 22.부터 보일러의 작동이 불량하여 사용을 중단함.

동년 2. 23. 오후부터 보일러가 갑자기 가동되어 그 후 야간에만 주로 가동하여 오다가 동년 2. 27. 01:21경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보일러실이 일부 소실됨은 물론 위층의 보일러실 내부가 전소되고 거실 일부가 그을음을 입는 피해가 발생함

1.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 김준길

이 화재는 피청구인이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시공하면서 기름보일러에 적합한 연도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또한 여천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동 화재의 원인이 보일러의 과열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및 보일러 제조업자인 신진 기계가 연대하여 피해액 금8,000,000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갑 : 여수설비사 (설치업자)

화재 발생 전에 공급되어 있던 기름 80리터가 3일 만에 거의 소모 된 점으로 보아 보일러 과열방지 장치의 작동중단 등 보일러 자체의 이상으로 보일러가 단속작동, 과열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여천소방서에서도 화재의 원인을 보일러 과열로 보고 있으므로 보일러 제조업자인 신진기계에게 책임이 있음

을 : 신진기계(주) (제조업자)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에 “배기가스 연도는 가연성이 있는 유론 파이프나 PVC파이프는 절대로 사용하지서는 안된다.” 라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설비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연도에 유론파이프를 사용하였고, 연도 끝에 부착되어 있는 개자리도 제거하지 않아 배기가스 배출이 순조롭지 않음에 따라 연도 내에 배출가스가 채워져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여수설비사가 책임을 져야 함

2.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제87회 위원회, 1991. 6. 17.)

피청구인 '갑'은 청구인에게 1971. 7. 70.까지 금1,163,000원을 지급한다.

3. 조정결정 이유

피청구인 '갑'은 기름 온수보일러를 설치·가공하면서 '연도재료는 보일러의 배기가스온도에 견디어



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동자부 고시와 동 보일러의 취급설명서상에 표기된 ‘배기가스 연도는 가연성이 있는 유론 파이프 및 PVC파이프 등을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시공상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 시공하면서 기존의 연탄보일러 용 유론연도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통상 시공업자가 지켜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므로 피청구인 ‘갑’ 은 이 화재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그 배상액은 당 위원회에서 조사한 피해 산정액 금1,163,000원으로 함이 적당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4. 조정결정 결과

피청구인 ‘갑’ 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불성립됨.

사례 8 - 하자있는 보일러 교체 시공 요구건

사건개요

청구인(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1동 남은주 외 8명)등은 '90. 4월경 피청구인(강희곤)이 분양한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지하층에 설치된 석유보일러(태양표)에 하자가 발생하여 동 보일러 제조업자가 도산하여 A/S를 받지 못하고 인근 수리업소에서 수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용도중 작동이 중단되고 3세대의 보일러에서 화재까지 발생한 실정임.

1. 당사자 주장

〈 청구인 〉 남은주 외 8명

분양업자인 피청구인이 불량한 보일러를 설치하여 발생된 하자이므로 완벽한 수리나 새 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함.

〈 피청구인 〉 강희곤

제조회사가 도산하여 A/S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청구인들이 새 제품으로 교체 설치한다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용의는 있음.

2.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제97회 위원회 : 1991. 11. 18.)

피청구인은 1991. 11. 30.까지 청구인 등의 각 세대별 보일러 교환 설치비용 중 50%인 금 900,000원을 부담한다.

3. 조정결정 이유

피청구인이 당 위원회에서 청구인 등이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교환 설치시 50%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받아들여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위와 같이 결정함.

4. 조정결정 결과

양 당사자 수락하여 성립, 조정결정대로 이행됨.

사례 9 - 보일러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건

사건개요

청구인(김명화, 강원도 강릉시)은 1992.10월 신축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피청구인이 제작한 기름보일러(모델명 :0000, 15)를 사용하던 중 1994. 11. 10 동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부(29평) 및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음.

1. 당사자 주장

〈 청구인 〉

보일러에서 경보음이 발생하여 이 건 화재발생 3일전인 11. 7. 19:00경 피청구인의 00대리점 A/S기사(‘박00’)로부터 연료분사기 부분에 차있던 공기를 빼는 수리를 받았고, 동 A/S기사로부터 다른 곳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피청구인이 제작한 보일러의 결함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므로 재산상의 피해액 금 65,8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피청구인 〉

화재직후 청구인의 보일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보일러의 버너댐퍼(연소공기 조절구)가 거의 닫혀 있는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동 보일러의 연도 및 소음기 부분에 그을음이 심하게 누적되어 있었고, 보일러 옆에 설치되어 있는 순환펌프 모터가 임의로 조작 분리, 이탈되어 있는 등 화재발생 전 누군가가 보일러 및 순환모터 등을 조작 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인 집(601호)의 전기계량기 박스가 비상계단 벽속에 매설되어 있는데 계단 물청소시 청소한 물이 동 박스 속에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601호의 전기계량기 전선피복들이 심하게 녹아있고, 전기계량기 옆부분이 전기 합선시 나타나는 그을린 흔적도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이 건 화재는 전기누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조정 결정 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5. 9. 30까지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조정 결정 이유

가. 이 건 보일러의 화재원인에 대하여

이 건 불에 탄 보일러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함)”의 감정결과(물리 23110-000호, 1995. 1. 11)에 의하면 이 건 화재는 보일러 내부의 하단부에서 누출된 연료(경유)에 인화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한편 피청구인은 전기누전에 의하여 이 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건 보일러의 전원코드 양끝단에 전기 합선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까지 보일러 내부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전기계량기의 누전에 의한 화재 발생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1) 연료누출의 원인에 대하여

위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보일러의 “에어벤트”부분이나 유로의 연결부 등에서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00기술연구원” 00기술시험평가연구소 산업설비팀 ‘조00’ 선임연구원은 동 원인으로 첫째, 연료 공급 펌프에 공기가 차게되면 연료 공급이 차단되어 보일러의 가동이 중단되며 이때 연료 공급 펌프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벤트” 장치에서 공기를 제거할 때 제거되는 공기와 함께 소량의 연료가 누출될 수 있으며 둘째, 보일러 내·외부의 연료관이 절단 또는 부분적으로 구멍이 발생할 경우 연료의 누출이 있을 수 있다고 함

한편, 이 건 화재 발생 3일전인 1995. 11. 7 피청구인의 00대리점 A/S기사(‘박00’)가 이 건 보일러를 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A/S기사는 1995. 11. 7: 19시경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여 보일러를 점검해 본 결과 이 건 보일러의 전자펌프(연료공급 펌프)에 공기가 차 있어 화장지로 연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공기를 제거했는데 당시 보일러 내부와 바깥부분에는 연료의 누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다른 부분의 이상유무를 물어와 이상없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함. 위 사항들과 A/S기사의 일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비록 A/S기사는 연료의 누출 없이 이 건 보일러를 수리하였다고 하나 화재 발생 3일전 까지 연료누출 흔적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A/S후 연료의 누출이 있어 이 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A/S과정의 하자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함.

2) 발화원인에 대하여

위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보일러 내부 연소물에서는 특이한 이물질의 연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연료가 누출될 경우의 발화 원인으로는 연료가 증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 내부에 내

장된 릴레이스위치 등의 스파크에 의해서 인화·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

한편 위 전문가(‘조00’)에 의하면 화재 발생시점이 계절(겨울)을 감안할 때 보일러실의 온도는 20℃ 정도로 추정되므로 이 온도에서 연료(경유)의 증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함.

따라서 발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이물질의 연소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청구인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원인에 의하여 이 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3) 위 1·2 항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연료의 누출은 보일러 자체의 결함 내지는 피청구인의 A/S상의 하자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이 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피청구인이 달리 이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화재에 대한 피청구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임.

나. 피해보상의 범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가재도구 금 41,300,000원, 집내부 수리비용 금 24,500,000원 총계 65,800,7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 위원회 간사실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정액법에 의거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결과 청구인의 피해액은 금 50,000,000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지급함이 상당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4. 조정 결정 성과
불성립

골프 에티켓

골프 에티켓은 코스에 대한 보호, 예의와 선행권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은 규칙은 아니나 골프를 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배려다.

1.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플레이어의 근처나 바로 뒤에 서서는 안된다.
2. 앞 조가 볼의 도달거리 밖으로 나갈 때까지는 볼을 쳐서는 안된다.
3. 지체없이 플레이하여야 하며, 같은 조가 모두 퍼팅이 끝나면 즉시 퍼팅 그린을 떠나야 한다.
4. 경기가 빠른 조는 통과시켜야 한다.
5. 톤진 잔디는 제자리에 놓아야 하며 벙커의 발자국은 반반하게 고쳐놓아야 한다.
6. 다른 사람의 퍼팅 선을 밟아서는 안된다.
7. 퍼팅 그린에 채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8. 깃대는 똑바로 제자리에 세워놓아야 한다.

